

◆ D-49 퇴직시에 30일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,
전화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취할수
있는 법적인 조치사항이 있는지?

- 1) 즉시 근로자에게 사직하겠다는 전화연락만으로 사직처리가 불가하므로, 조속히 출근하여 다른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까지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“출근독촉”에 관한 문서를 “내용증명”으로 송달하고,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거부할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처분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함.
- 2) 근로자가 “사직서”를 제출하고 익일부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해지는 취업규칙에서 정한바 또는 민법 제660조에 의거 통상 30일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함. 따라서 위 경우에도 대체할 수 있는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까지 출근하여 근무토록 하고, 사직서수리일(통상 사직서제출일이 속한 1임금지급기 다음달 말일이 내에 수리)까지 근무하지 아니하면 무단결근처리되고, 따라서 퇴직금액이 감액됨을 알려주어 일방적인 사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줄이도록 하여야 함.